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6-109호

「2026년 대구 AI 활용 청년 기술창업 지원사업」
청년창업가 정주여건 지원 창업기업 모집공고

재단법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구지역 청년창업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지역 기반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6년 AI 활용 청년 기술창업 지원사업」 청년창업가 정주여건 지원 참여대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1월 16일

(재)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Ⅰ 공고 개요

❑ 사업목적

- 대구소재의 청년창업자(기업)의 임대료·정착자금 지원을 통해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에 몰입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
- 역외 창업인재 유입과 지역 인재 유출 방지를 통해 청년창업기업의 지역 기반 성장과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력 제고

❑ 사 업 명 : 2026년 대구 AI 활용 청년 기술창업 지원사업 - 청년창업가 정주여건 지원(주거/사업장 임대료)

❑ 지원기간 : 2026.12. ~ 2027.09.(10개월)

❑ 공고기간 : 2026. 11. 16.(월) ~ 12. 17.(목) 16:00 까지

❑ 주요 사업내용

구분	주거 지원	사업장 지원
모집공고	정주 지원 모집 공고 게시	사업장 지원 모집 공고 게시
모집시기	2026. 11. 16. ~ 12. 17.(약 1개월 간)	
모집방법	DASH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	
지원대상	대구 청년창업기업에 재직 중인 **역외** 청년 근로자 및 1인 청년 창업자	대구 소재 사업장을 둔 청년 (예비)창업기업
지원규모	40명 / 1명당 월 최대 25만원 이내(10개월)	10개사 / 1개사당 월 최대 50만원 이내(10개월)
지원항목	주거 임대료	사업장 임대료
선정절차	공모 ‣ 계획심의 ‣ 현장실사(거주 또는 사업장사용여부) ‣ 지원 승인	
선정방법	지원기업의 지역 정착 의지 계획 등 심의	대구 사업장의 장기 활용계획, 성장계획 등 심의

* 중복지원 가능

II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 주거 임대료 지원

① 신청은 창업기업 대표자가 일괄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받는 자는 대표자를 제외한 재직자로, 창업기업당 최대 3인까지 신청 가능

② 단, 1인 기업(재직자가 대표자 1인인 경우)은 대표자도 지원대상임

③ 지원받는 자는 2026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구로 이전하였거나 2027년 2월 이내 이전 예정인 재직자임

④ 단, 지원받는 자가 대구 관내 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자일 경우, 대학 입학 이전 주소지가 대구 관내가 아닐 경우 신청 가능

* 대구 관내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이 공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③의 기준에 따름

❑ 사업장 임대료 지원

① 대구에 사업장이 있는 창업기업

② 대구에 사업장을 설치할 예정인 예비창업자

③ 대구에 사업장을 설치할 예정인 역외 창업기업

⇒ 상기 ①~③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설치 예정인 자는 선정 이후 3개월 이내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조건 미이행 시 선정이 취소됨

※ 대구 소재 청년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기준

<청년 기준>

1.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2조 1항 1의 정의 따른 청년(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창업기업 기준>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
2.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사업장 소재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상 연구소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창업기업이거나, 이전 예정으로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 이전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선정 이후 3개월 이내 본사 이전을 완료하여야 함
3. 모집공고일(2026.11.16.)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신청가능 업력: 2019년 11월 16일 ~ 2026년 11월 15일
   - 신청가능 업력 기준: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예비창업자 기준>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4호 정의에 따른 예비창업자
2. 지원기간 종료 1개월 이전까지 대구시 관내에 본점 사업장을 등록하여야 함

III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금액

구분	지원규모	지원항목	지원금액	비고
주거 지원	40명	주거 임대료	1인당 월 최대 25만원 이내 × 10개월	사후지급 (증빙 제출 후 매월 지급) * 보증금, 관리비는 지원하지 않음
사업장 지원	10개사	사업장 임대료	기업당 월 최대 50만원 이내 × 10개월	

❑ 지원기간 : 2026.12. ~ 2027.09.(10개월)

* 2026년 12월분은 선정 이후 소급하여 지급함

Ⅳ 선정절차 및 방법

❑ 모집 및 선정절차

창업기업 모집		요건검토, 서류 계획심사		현장실사		협약체결
DASH 플랫폼 내 창업자(기업) 모집 공고 게시	▶	평가지표에서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	▶	· 현장실사 실시 -거주여부 확인 -사업장 사용 확인	▶	선정과제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26.11.16. ~ 12.17.		12월 3주차		12월 4주차		12월 5주차

❑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항목 :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 기반 서면평가

평가항목	주거 지원	배점	사업장 지원	배점
정착계획	· 대구 이전 배경 및 정착계획의 구체성, 지원 종료 후 거주 지속 가능성	30	· 대구 사업장의 장기 활용계획 및 지원 종료 후 사업장 유지 가능성	30
주거·공간 활용계획	· 주거지 확보·전입 일정 및 실제 거주 계획의 적정성	20	· 사업장 규모·용도의 적정성 및 실제 공간 활용계획의 구체성	25
지속·성장 가능성	· 기업의 인재 활용 및 고용 유지 가능성 · 1인 창업자의 사업활동 지속 및 성장 가능성	20	· 제품·서비스 경쟁력 및 사업장 활용을 통한 기업 성장 가능성	20
기업(지역) 정착·고용계획	· 역외 청년인재 채용 및 안정적인 고용 유지계획 · 대구 거주 유지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계획의 구체성	20	· 지역 청년 고용 유지·확대 및 지역기업·기관 협력계획	15
지원 필요성·기대효과	· 주거비 부담 완화의 필요성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 효과	10	· 임대료 부담 완화의 필요성 및 경영 안정·운영기반 강화 효과	10
소계		**100**	**소계**	**100**
가점 사항	· 대구 신규 창업 또는 사업장 설치/이전 기업(공고일 이전 1년 이내 또는 예정)	2	· 대구 신규 창업 또는 사업장 설치/이전 기업(공고일 이전 1년 이내 또는 예정)	2
	· 지역 청년 고용기업	2	· 지역 청년 고용기업	2
	· 대구 사업장이 본사 또는 연구소인 기업	2	· 대구 사업장이 본사 또는 연구소인 기업	2
소계		**6**	**소계**	**6**
합계		**106**	**합계**	**106**

- 선정기준 : 평점 70점 이상 고득점순 선정

< 평가점수 산출식 >

평가 평가위원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평가위원 수

* 기준점수 이상 미선정 기업의 경우 후보군으로 편성·관리하며, 편성된 후보군은 사업기간 내 선정(기업)자 중도탈락 시 별도 심의 없이 선정하여 운용함

* 취득점수가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미달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현장실사 : 사업장 사용 및 거주여부 현장 확인

* 현장실사 시, 기 제출한 계약서와 현장 거주 및 사용여부 대조 예정으로 지원받는 자가 현장실사에 대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함

Ⅴ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11. 16.(월) ~ 2026. 12. 17.(목) 16시까지 * 시간 엄수 必

- 신청방법 : DASH 홈페이지 지원사업공고 (https://startup.daegu.go.kr/)를 통한 접수

- 제출서류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구분		주거	사업장
공통 서류 *필수	▪ 지원신청서 1부	○ [서식1]	○ [서식2]
	▪ 지원계획서 1부	○ [서식3]	○ [서식4]
	▪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 1부	○ [서식5]	
	▪ 지원대상 임대차 계약서 1부	○(주거)	○(사업장)
	▪ 주민등록등본(상세)	○(지원대상)	○(대표자)
	▪ 기업소개자료 1부	○	
	▪ 사업자등록증 1부	○	
	▪ 4대보험가입자명부 1부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1부(최근 2개년 재무제표)	-	○

구분			주거	사업장
해당시	법인 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1부 **(1개월 이내 발급분, 말소사항 포함)**	법인사업자의 경우 제출	
	예비 창업자	▪ 사실증명원 **(폐업사실 및 현재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예비창업자의 경우 제출	
	주소지 이전 예정자	▪ 대구 전입 또는 사업장 설치 확약서 1부 *** 2027년 2월 내 이전(전입) 예정자**	이전/신규 설치 예정자의 경우 제출 [서식6]	
	가점사항	**사업장 지원 가점사항** ▪ 대구 신규 창업·사업장 설치 기업 가점 : 사업장 이전 변경이력 확인서 등 확인자료 ▪ 지역 청년 고용기업 가점 : 주민등록등본 등 지역청년고용 확인자료 ▪ 대구 사업장이 본사 또는 연구소 기업 가점 : 소재지 확인 자료	해당시 제출	
제출처		▪ 대구창업허브(DASH)를 통한 접수**(이메일 접수 불가)**		
비고		▪ 상기 위 제출 서류는 반드시 날인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 **주민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는 반드시 마킹**하여 제출 ▪ 제출 서류 미제출(미비), 신청사항과 다를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선정 이후 요건에 따라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출은 당해연도 설립 기업의 경우 제외 /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제외대상

1.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도용하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 작성된 경우
2.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4. 금융기관 등을 통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중인 자(시효 소멸자 제외)
5.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6.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중인 자 또는 단체, 기업
7.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8.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청년

❑ 유의사항

- 주거와 사업장 지원은 동시 신청가능
- 타 정부지원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주거 또는 사업장의 임대료 지원을 받는 경우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없으며, 선정 이후 허위사실 또는 중복지원 적발 시 선정취소, 환수와 더불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에 3년간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Ⅵ 문 의 처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로컬창업팀 김태환 매니저

(053-359-3674 / kth0116@ccei.kr)